

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수정 공고

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「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1. 19.

청주상공회의소 회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- 모집규모 : 청년 신규 채용 466명(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)
 - 일반 비수도권 지역: 444명
 - 우대지원지역: 9명
 - 특별지원지역: 13명

○ 지원내용

[기업공통]

- 대상: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※ 5인 미만 기업 특례 신단 내 중견기업 참여 가능
- 채용요건: 만 15세~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지원내용: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

[청년구분]

- 일반 비수도권 지역: 2년간 최대 480만원(6·12·18·24개월차 각120만원)
- 우대지원지역: 2년간 최대 600만원(6·12·18·24개월차 각150만원)
- 특별지원지역: 2년간 최대 720만원(6·12·18·24개월차 각180만원)

○ 지원한도 :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%

○ 관할지역 : 충청북도 청주시, 진천군, 충평군, 괴산군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

2 지원내용

■ 기업요건 ※ 아래 ①~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④ 요건을 충족한 기업

1)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
-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“기준피보험자수” 포함)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
* 사업주, 일용근로자, 특고·예술인 가입자는 산정 제외
-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, 소수점 이하는 올림(예시: 평균 8.02명 → 9명으로 인정)

2) 5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해당 기업

-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·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, 청년 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사업 참여 가능
* 5인 미만 기업 특례요건 ‘붙임1’ 확인(고용보험 업종코드로 판단)
- 기준피보험자 수 1인 이상(대표자 제외) 사업장에 한하여 특례 적용

3)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
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,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
* 단,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,000명이며, 채용자명단 승인 인원 기준 5,000명에 도달 시 ’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(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250명)

4) 연 매출액이 ‘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x 1,900만원’ 이상인 기업

- (업력 1년 이상인 기업) 2024년, 2025년 중 1개년도 제출
- (업력 1년 미만인 기업)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
- 면세_법인사업자,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

※ 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
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, 고용보험료 체납기업,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

■ 청년요건

1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-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(최고 만 39세 한정)

2)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

○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하여 제외

-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(단,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)

-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자

- 「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* 다만,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,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(소득 없음)을 증빙한 경우, 또는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

※ 단, 다음 중 채용일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 제외
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*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- 지원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
-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(휴학포함) 중인 자

* 단,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야간대학,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, 다른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

■ 지원요건

○ 채용조건: 기업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

- 2026.1.1.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

* 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의 정보를 기업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
○ 근로조건: 고용보험 가입 필수,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,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자*,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450만원 이하 임금**

* 6개월 근속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, 채용 시점에 기업 신청 및 채용자평단을 제출하여야 함

** 채용자평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, 1회차 지원금

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자급 총액이 2,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

■ 지역구분

일반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	우대지원지역 소재기업	특별지원지역 소재기업
청주, 진천, 증평	옥천	괴산, 보은, 영동

■ 지원한도

○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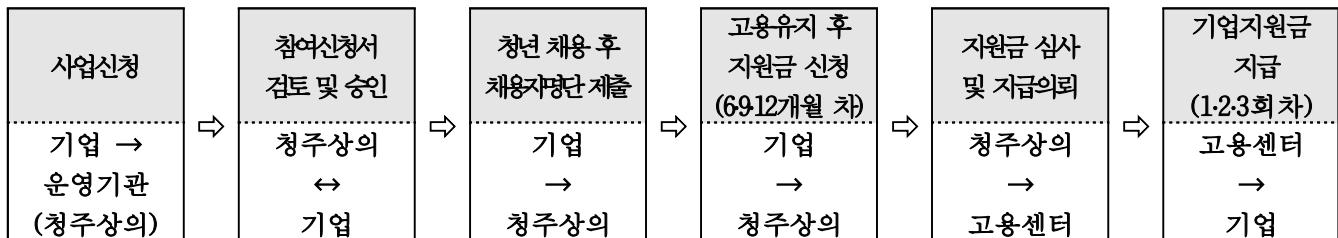
-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%를 곱하여 산출, 소수점 이하는 올림
(예시: 평균 피보험자 수 8.3명 →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→ $9 \times 0.5 = 4.5$ →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)

■ 지원금액

- 기업: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(6개월차 360만원, 9·12개월차 각 180만원)
- 일반 비수도권 청년: 2년간 최대 480만원(6·12·18·24개월차 각 120만원)
- 우대지원지역 청년: 2년간 최대 600만원(6·12·18·24개월차 각 150만원)
- 특별지원지역 청년: 2년간 최대 720만원(6·12·18·24개월차 각 180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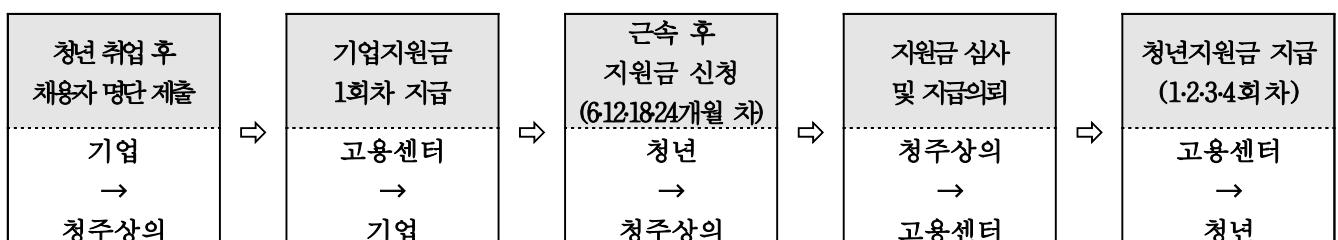
3 추진절차

■ 기업지원금



※ 기업신청, 채용자명단 제출, 기업지원금 신청 등 전 과정은 '고용24'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

■ 청년지원금



※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이후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

※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각 근속기간(6·12·18·24개월) 도래 후 '고용24'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야 함

4 제출서류

참여기업 신청 시 필수서류

① 사업자 등록증
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

② 연 매출액(2024년, 2025년 중 택 1) 증빙서류

- ※ 국세청(홈택스)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된 **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**(법인, 개인사업자),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(면세사업자)만 인정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법인, 개인)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, 고유번호증(비영리단체) 또는
면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

③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, 협약서, 사업주 확인서(붙임1)

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

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필수서류

① 근로계약서 사본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

②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(홈택스 온라인 발급)

- ※ 홈택스 누리집 > 민원증명 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③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* &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붙임2), 사업주 확인서(붙임2)

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

* 고등학교, 대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 시 졸업예정증명서 등, 대학교 제적 시 제적증명서 등 제출

5 신청안내

○ 신청기간 : 2026. 1. ~ 2026. 12.

* 사업 신청 전,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하여야 함

○ 접수방법 : 고용24 누리집(<https://www.work24.go.kr>) 온라인 신청

○ 문의처 :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☎043-263-2669

- 메일: ansrudgp@korcham.net

※ 유의사항

- 인위적 감원 발생 시, 감원 발생 전일까지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나, 감원 발생일 이후 모든 참여자에 대해 지원이 종료되므로 유의하여야 함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,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 또는 지급받은 경우, 도약장려금 지급이 중지되며,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함 또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- 근로조건 변경 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함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며, 지침에 따른 최종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